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28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	2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학영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6. 24.
-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대리점은 본사와의 현격한 거래상 지위의 격차 때문에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 등 거래조건상 불이익을 받더라도 사실상 거부하기가 곤란함. 또한, 남양유업 사태와 같이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사업자단체협의회 가입을 방해하거나 사업자단체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대리점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는데, 이 같은 공급업자의 보복행위를 우려하여 대리점들은 사업자단체 활동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

이에 대하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리점의 사업자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고(안 제11조의2 신설),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계약 해지, 공급 중단 등과 같은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안 제12조제1호 신설),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Ⅲ. 검토의견: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

- 개정안은 대리점사업자의 단체구성권을 부여하고, 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제12조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리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u><신설></u> 1. ~ 4. (생략)	<u>제11조의2(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u> 대리점은 권익 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대리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 ----- ----- ----- ----- ----- ----- ----- -----. 1. <u>제11조의2에 따른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u>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 현행법에는 대리점사업자단체 설립의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대리점들의 단체 구성 및 활동에 소극적인 측면이 발생하고 있어 당사자 대등의 원칙을 보다 두텁게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개정안은 개별 대리점의 경우 공급업자와의 거래상 지위의 격차로 인하여 일방적인 거래조건의 변경 등에 대하여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체구성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 참고로, 현재 거래상 지위 격차와 관련하여 단체구성권이 인정되는 국내 사례로는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단체 등이 있음.

< 사업자 단체 관련 주요 법률 현황 >

소관부처	법적 근거	내 용
공정거래 위원회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¹⁾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 도모를 위한 단체
금융 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2 ²⁾	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계약 체결·유지를 위한 단체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

□ 개정안은 단체 가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제공(계약해지, 공급 중단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공급업자와의 협상에 있어 거래상 약자인 대리점 측에 이른바 당사자 대등의 원칙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은 공급업자가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에 대한 보복금지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제24조), 과징금(제25조), 벌칙(제30조), 손해배상 책임(제34조)이 따르게 되는바³⁾, 「가맹사

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여성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2(가맹점 단체 설립 등) ①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신용카드가맹점 매출규모 조사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구입강제행위를 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한 자
4. 제9조를 위반하여 불이익 제공 행위를 한 자
5. 제10조를 위반하여 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한 자
6. 제11조를 위반하여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행위를 한 자
7. 제12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8. 제23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34조(손해배상 책임) ① 공급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공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행위 등을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⁴⁾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자가 제6조, 제7조 또는 제12조를 위반하여 대리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공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